

# 1. 신기술보급 사업추진

## 1. 목 적

-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
-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

## 2. 추진방향

- 농업R&D 사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특성화 사업 기반조성
- 안전 농축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기술시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
- 농산물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
- 단계별 연사회,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

## 3. 근거법령

- 농촌진흥법 제4조(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의 보급)
- 농촌진흥법 제13조1항(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보조)
-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## 4. 2011년도 사업비 내역

| 구 분    | 사업종류<br>(종) | 사업량<br>(개소) | 사업비(백만원)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|
|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계          | 국비        | 도비      | 시군비       | 자부담   |    |
| 계      | 114         | 617         | 17,472.622 | 4,383.811 | 2,820.2 | 8,879.611 | 1,353 |    |
| 벼      | 11          | 147         | 4,648      | 400       | 1,154.4 | 2,348     | 709.6 |    |
| 병해충    | 8           | 36          | 550        | 219       | 47.1    | 283.9     | -     |    |
| 친환경    | 11          | 69          | 2,676      | 1,181     | 174.6   | 1,300.4   | 20    |    |
| 전·특작   | 15          | 36          | 1,357      | 486.5     | 147.6   | 624.5     | 98.4  |    |
| 축산     | 27          | 84          | 3,890      | 915       | 668     | 2,177     | 130   |    |
| 채소     | 14          | 60          | 1,432      | 391       | 195     | 716       | 130   |    |
| 화훼     | 9           | 20          | 720        | 85        | 165     | 360       | 110   |    |
| 수출농업   | 3           | 6           | 325        | 140       | 13.5    | 162.5     | 9     |    |
| 과수     | 14          | 43          | 1,576.622  | 467.311   | 225     | 738.311   | 146   |    |
| 연구회 육성 | 2           | 116         | 298        | 99        | 30      | 169       | -     |    |

## 5. 사업추진 요령

- 사업주관 기관 : 시군농업기술센터
- 사업 담당부서

| 구 분     | 담당과    | 담당부서  | 담당자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벼 분야    | 친환경기술과 | 작목기술팀 | 지도관 이수영<br>지도사 최을수 | 229-5861<br>229-5862 |
| 병해충 분야  | 친환경기술과 | 녹색기술팀 | 지도관 윤종철<br>지도사 송성호 | 229-5871<br>229-5873 |
| 친환경농업분야 | 친환경기술과 | 녹색기술팀 | 지도관 윤종철<br>지도사 엄미옥 | 229-5871<br>229-5875 |
| 전·특작 분야 | 친환경기술과 | 작목기술팀 | 지도관 이수영<br>지도사 권도안 | 229-5861<br>229-5864 |
| 축산 분야   | 친환경기술과 | 녹색기술팀 | 지도관 윤종철<br>지도사 김창한 | 229-5871<br>229-5875 |
| 채소 분야   | 친환경기술과 | 녹색기술팀 | 지도관 윤종철<br>지도사 김진규 | 229-5871<br>229-5872 |
| 화훼 분야   | 친환경기술과 | 녹색기술팀 | 지도관 윤종철<br>지도사 김진규 | 229-5871<br>229-5872 |
| 수출농업 분야 | 친환경기술과 | 녹색기술팀 | 지도관 윤종철<br>지도사 김진규 | 229-5871<br>229-5872 |
| 과수      | 친환경기술과 | 작목기술팀 | 지도관 이수영<br>지도사 이준배 | 229-5861<br>229-5963 |
| 품목별연구회  | 친환경기술과 | 작목기술팀 | 지도관 이수영<br>지도사 이준배 | 229-5861<br>229-5863 |

-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
  -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, 기계장비,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
  -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 개최
    - 사업에 따라 인근농가와 대비하여 소득분석 실시
    - 인근농가의 기준 : 동일지역내 동일작목, 유사규모, 유사작기 농가 중 해당 시범요인을 수용하지 않은 5농가의 평균소득
- ※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별도 선정

-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
  -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·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일반시 농촌지도담당부서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, 사업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경우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·승인하고 국·도비사업인 경우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
  - 특히 시·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- ※ 조정 변경내용은 상급기관에 보고

○ 대상자 선정

- 선정기준
  -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과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
  -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, 농업경영인, 4-H회원, 한국농업대학 졸업생,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및 독농가 등
  - 2012년 특성화사업 기반정착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 우선지정
  - 2011 특성화사업에 제외된 시군이 2011년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강화
- 선정절차
  -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,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, 객관성,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농가 중에서 영농규모, 제반여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 조사하고, 사업에 따라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(일반시는 농촌지도담당부서장이 선발)
    - ※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(일반시는 농촌지도담당부서장)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
  - 농업기술센터소장(일반시는 농촌지도담당부서장)은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명단을 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, 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
  - \* 임의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

○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

-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

- 농업기술센터소장(일반시는 농촌지도담당부서장)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

※ 사업 추진 중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

-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
-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
-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

#### ○ 평가회

- 시범사업 분야별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시범사업 대표농가의 우수사례 발표시 외부 전문가를 초청 사례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우수기관 또는 대표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추진

#### ○ 사후관리

- 농업기술센터소장(일반시는 농촌지도담당부서장)은 단위사업별로 지정된 기간 동안 특별 관리
-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, 전·유용 등 타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기기는 성질에 따라 사업완료 후 2~3년까지 처분제한
- 사업 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

#### ○ 기술 수용율 조사

- 수혜자 만족도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추진할 사업 조정
- 시범사업 대상농가의 전년도 및 당해연도 신기술 수용율 조사
- 주요평가지표 : 기술수준 향상률, 농가 소득증대율, 노동력 절감률 등
- 성과측정(11월~익년도 1월) : 세부시범별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사업성과를 비교하여 측정

#### ○ 시범사업장에는 사업내용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업홍보 및 교육용으로 활용

- 안내판(표찰) 설치

<첨부>

## 시범사업 안내판 설치(안)

### (예시) 딸기 로열티대비 우량묘 생산시범

본 시범사업은 국내육성 신품종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, 경기도농업기술원, 00시(군)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

※ 사업목적

- 대표(참여농가수) : 홍길동(5농가)
- 사업규모 : 0.2ha
- 사업비 : 000백만원(국비 , 도비 , 시군비 , 자부담 )
- 시범요인
  - 딸기 국내산 우량모주 생산
  - 딸기 베드육묘시설 설치
  - 국내산 딸기 우량묘 공중 채묘시설 등

※ 담당자 : 000지도사(전화번호 : 000-000-0000)



농촌진흥청



경기도농업기술원

시군마크 : 0시(군)농업기술센터

1

주)

- 표찰내용은 단위사업별 세부추진요령에 의거 작성
- 규격은 사업장별로 적정 크기로 제작 설치
- 제목, 국·도비사업의 협력사업, 사업내용, 기관명의 바탕색은 다르게 하되 바탕색, 글자색, 글자 크기 등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
- 국비사업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 
도비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,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 
추진한다는 내용을 기재
- 안내판은 사업추진과 동시에 설치

## 6. 201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

- 신청서 제출기관 : 시군 농업기술센터
- 신청자격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
  - 신청기준
    -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단지 지역
    -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 할 수 있는 지역
    -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
    - 전작·원예·특용작물 시범사업중 눈에 설치 가능한 사업은 눈에 설치 가능
  - 선정절차
    -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,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실시
    -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
    -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능력, 시범사업 추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업기술센터 내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
- 구비서류
  - 사업신청서(계획서) : 농업기술센터에 비치